

등록금심의위원회(2차) 회의록

| | | | | |
|----|-----|----|----|-----|
| | 담당 | 주임 | 처장 | 총장 |
| 결재 | 김영숙 | / | 전경 | 김과식 |

| | | | |
|-----------|----|------|------------------|
| 회의소집 통보일자 | | | 2014. 01. 21 (화) |
| 위원정수 | 8명 | 재적위원 | 6명 |

1.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 14:00 ~ 15:30
2. 장소 : 제1강의도 1203호실(사무처장실)
3. 참석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 소속 | 직명 | 성명 | 서명 | 비고 |
|----------|-----|-----|------|----|
| 사무처 | 위원장 | 윤과식 | 윤과식 | |
| 기획처 | 위원 | 오순모 | 오순모 | |
| 산학처 | 위원 | 길민욱 | 길민욱 | |
| 본 대학 재학생 | 위원 | 안세현 | "불참" | |
| 본 대학 재학생 | 위원 | 김민진 | 김민진 | |
| 본 대학 재학생 | 위원 | 김보배 | "불참" | |
| 본 대학 동문 | 위원 | 정명희 | 정명희 | |
| 관련전문가 | 위원 | 박선신 | 박선신 | |

4. 안건
 - 가. 2014학년도 교비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건

나. 2013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잉여금 집행관련 심의·의결 건

5. 회의내용

윤피식 위원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재적위원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윤피식 위원장 : 2014학년도 교비예산 및 2013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잉여금 집행 관련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회의 자료를 검토하여주시고, 먼저가. 2014학년도 교비예산에 대한 설명을 기획처장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모 위 원 : 가. 안전에 따라 2014학년도 교비예산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라 교비회계를 등록금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개정 진행에 따라 등록금·비등록금회계의 과목 구성으로 편성하였으며 등록금회계 수입, 지출 총액은 6,176,156천원, 비등록금회계 수입,지출 2,370,65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석위원 전체 : 2014학년도 교비예산 편성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

박선신 위 원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구분은 기존의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구분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윤피식 위원장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에 있어 기존의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구분보다 등록금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4학년도 등록금의 경우 실제적인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4학년도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평균등록금을 2013학년도와 동결시키기 위해 계열별 등록금을 인하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4학년도 등록금수입 예상액은 5,333,152천원입니다.

(의견을 나누면서 교비예산 편성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하시다.)

윤피식 위원장 : 2014학년도 교비예산 편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민욱 위 원 : 2014학년도 교비예산 편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윤피식 위원장 : 2014학년도 교비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사항 없이 동의하십니까?

참석위원 전체 : 동의합니다.

윤피식 위원장 : 다음은 나. 2013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잉여금 집행 관련하여 기획처장을 통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모 위 원 : 나. 안전에 따라 2013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잉여금 집행은 「사립학교법 제 32조의3(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 하여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본예산 이월금은 금293,502천원이며, 결산이 반영되는 추가편성예산의 이월금은 금868,745천원으로 이월금 차액 금575,243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월금 차액 집행 기준]

- 1) 명시이월금은 이월 목적대로 사용한다.
- 2) 이월금은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활용하여,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리운영비
 - 나. 연구학생경비
 - 다. 기계기구, 집기비품, 도서구입비
 - 라. 교직원의 보수

(의견을 나누면서 이월금 차액 집행 기준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다.)

윤피식 위원장 : 2013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잉여금 집행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민욱 위 원 : 2013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잉여금 집행 기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윤피식 위원장 : 2013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잉여금 집행 기준에 대하여 다른 의견 사항 없이 동의 하십니까?

참석위원 전체 : 동의합니다.

윤피식 위원장 : 그러면, 2014학년도 교비예산 및 2013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잉여금 집행관련 심의·의결 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붙임 1. 2014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1부. 끝.

위 사실을 확인함.

2014년 1월 28일

위원장 윤피식



위 원 오순모



위 원 길민욱



위 원 안세현

(서명)

위 원 김민진



위 원 김보배

(서명)

위 원 정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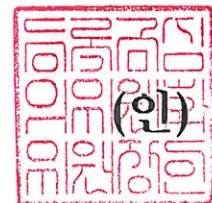


위 원 박선신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문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문경대학교총장 귀하